

대학 캠퍼스의 수요자 친화형 공간배정기준 설정 연구

박승연*, 최정민**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석사과정,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1. 서론

캠퍼스 공간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불러들이는 장소 자산(place asset)으로서 대학 홍보 전략이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캠퍼스 마케팅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캠퍼스 마케팅(campus marketing)은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공간 전략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한 대학들은 수요자 친화적 캠퍼스 리노베이션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요자 감소에 따른 캠퍼스 환경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공간 유형과 공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임시방편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캠퍼스 공간은 공동의 자산으로 공평성, 일관성, 효율성, 융통성을 기본 원칙으로 공간을 배정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이 캠퍼스 공간을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정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수요자 친화형 공간운영규정 및 배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공간 공개념', '공간 배정', '공간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론과 제도를 연구하여 공간배정기준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지역거점국립대)의 공간관리규정 및 공간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요자 친화적 공간배정과 운영기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캠퍼스 공간 관련 이론, 제도, 쟁점

2.1 캠퍼스 공간 공개념

공간 공개념은 토지 공개념에서 원용된 용어로 토지나 공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개념이다(정주용 외, 2018).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나 토지의 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캠퍼스 공간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교내 구성원이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캠퍼스 공간에 대해 토지 공개념을 똑같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캠퍼스 공간 공개념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해 특정 학과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배제하고, 학내 어느 조직과 학과가 그 공간의 쓰임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정주용 외, 2018).

2.2 공간비용채산제(Space Charging)

공간비용채산제는 공간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구성원에 대해 공간 회수 또는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학 공간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대학 재정을 운영하는 데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연구와 교육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대학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간비용채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간 배정 기준과 초과 사용료, 기준면적 미달 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공간관리 업무 및 데이터 표준화, 공간 예약 및 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 공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3 공간배정기준(Space Standards)

공간배정기준은 구성원들의 공간 요구, 배분, 공간비용채산제, 공간 재배치, 산·중축 시의 공간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효율적인 공간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공간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공간배정기준의 미비와 구성원의 인식 부족, 운영 및 관리인원 부족, 시설관리 시스템 부재,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배정기준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2.4 관련 제도

2.4.1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되며, 교사시설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Table 1. 교사시설 기준면적(출처: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3)

구분 \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2.4.2 국립대학 시설 공간 활용 평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립대학교 시설 공간 활용 평가는 한정적인 대학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 결과는 교육부의 시설예산 배분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 절차는 5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교육부와 전문가관의 점검을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시설예산이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학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초과 사용한 면적에 대해 징수 및 회수를 통해 공간 활용률을 올리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2.5 캠퍼스 공간 수요자 관련 쟁점

대학 신문과 대학 방송사, 일간지 등과 같은 매체들을 통해 캠퍼스 공간에 대해 교육 수요자들이 학생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그중 첫 번째는 공간을 배정할 때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학생을 위한 공간은 없이 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과방, 동아리방, 소모임 공간 등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세 번째는 공간 배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 네 번째는 학과(부)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간 배정에 대한 문제점이다.

Table 2. 매체를 통한 수요자의 캠퍼스 공간 관련 쟁점

제목	공간 관련 쟁점	매체
자치공간 축소에 인문대 모반 학생들 항의	학생들의 자치공간에 대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핵심은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가 부재했다는 데 있다.	대학신문
학내 가용 공간 부족에 학생들 불만,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A중앙동아리의 ㄱ 회장은 “활동을 하기에 동아리방은 좁은 편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별과제나 소모임의 경우에도 학내 공간을 선호했다.	부산대 언론사
대학가 공간 배정 문제, 지하캠퍼스로 해결	중앙대로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강의실에서 의사, 책상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실정이다. 건국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 배정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학생자치기구들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립대 신문
대학, 학생 자치 공간..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재학생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학생대표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학내 공간 재배치 등 현안들이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대학 본부의 단독 결정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항의하는 동시에, 학생-학교 간 의사소통 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마이뉴스
본교 공간비용채산제 시행, 공간 배분 논란	“기준 면적이 일률적인 기준인 인원 수로 정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 본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원 수만을 반영한 단편적인 기준 때문에 소형 학과의 경우 과방을 반납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며 “소형 학과의 과방 활용도가 다른 학과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원 비율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대신문

3. 국립대학교 공간 배정 및 관리 규정

3.1 공간관리 규정의 개념 정의

공간관리 규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사용주체’, ‘관리주체’, ‘기준면적(기본사용면적, 기본공간)’, ‘추가사용면적(초과사용면적, 초과공간)’, ‘특수시설 공간’ 등이 있다. 이 중 ‘사용주체’와 ‘기준면적’의 개념 정의로 인해 사용주체가 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Table 3. 공간관리 규정 내 개념 정의

용어	정의	비고
사용주체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교수, 학과, 전공, 학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연구소, 각종 부서 등)	- 사용주체가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 - 한경대학교의 경우 사용 주체에 대해 정의하지 않음
관리주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총장으로부터 점유 및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단과대학의 장, 지원 및 부속시설의 장 등	
기준면적(기본사용면적 또는 기본공간)	사용 주체가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공간(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받은 면적),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등	- 사용주체가 기준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공간으로 정의하여 공간 사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못함
추가사용면적(초과사용면적 또는 초과공간)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으로 초과공간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면적	
특수시설공간	사용 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학문적 특성상 운영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초과공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간	

3.2 공간관리규정 주요 내용

공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 관리주체에게 사용권 위임, 공간의 개방적 운용, 특별(용역)사업에 따른 연구공간의 반납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특히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간을 회수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기준면적에 대한 공간배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Table 4. 공간관리 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음
관리주체에게 사용권 위임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사용권을 위임함
공간의 임의변경 금지 및 훼손 시 원상복구	공간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금지함
공간의 개방적 운용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간의 사용을 개방함
공해 발생 공간 배정 시 교육 및 연구에 지장 초래 금지	소음, 악취, 진동 등 공해를 발생하는 활동의 공간이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정함
특별(용역) 사업에 따른 연구공간의 반납	특별한 연구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간은 연구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공간 반납해야 함
효율적 활용을 위한 총장의 공간배정 및 회수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의 점유 및 사용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함
기준 면적에 대한 공간배분	공간의 배분을 위해 공간사용지침을 정하고,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배분함

3.3 국립대학 공간(조정) 관리위원회

공간(조정) 관리위원회는 학교별로 명칭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12개의 대학에서 공간조정위원회 명칭으로 조성되었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기획처장이 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생 위원이 포함된 학교는 4개 대학(강릉원주대, 경북대, 안동대, 제주대)이 있다. 강릉원주대에서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공간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Table 5. 공간(조정)관리위원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명칭	공간조정위원회(12개 대학), 공간관리위원회(2개 대학), 공간운영위원회(2개 대학), 시설·공간조정위원회(2개 대학), 시설공간 활용위원회(전북대), 캠퍼스 기획위원회(부경대), 교육환경조성위원회(충북대)
위원장	기획처장(15개 대학), 기획협력처장(금오공대), 교학부총장(경북대), 교무처장(공주대)
구성	- (위원회 구성) 대부분 대학은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 보직교수들과 공간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관리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구성원 참여) 당연직 위원 이외에 계열별로 추천(강원대), 단과대학별 각 1명의 전임교원 포함(경상대, 목포대),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부산대) - (전문성 보완) 강릉원주대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공간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 (학생위원 참여) 강릉원주대, 경북대, 안동대, 제주대 등은 학생 위원 1명을 공간위원회 포함
역할	- 공간 배정 및 시설관리, 공간사용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등, 공간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 등, 행·재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 캠퍼스의 종합계획 및 조정, 학교시설 중합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3.4 공간비용채산제 운용

공간비용채산제는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공간사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된 사용료는 대학회계 수입으로 학내 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초과공간사용료는 각 대학마다 금액과 납부 시기가 다 다른데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Table 6. 공간비용채산제 운용

구분	내용
초과공간사용료 부과	기본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공간사용부담금 부과
공간비용채산제 사용료 용도	납부된 사용료는 대학회계 수입으로 학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에 사용
공간 사용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공간사용부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초과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 주체에 대하여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
공간비용채산제 사용료 납부	초과 공간사용료의 산정기준, 부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 총장이 따로 정함 연납 2만 원-10만 원, 월납 2천 원-3만 원 납부
인센티브 제도	기준 면적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지원(공주대) 기준면적 미달 시 기준면적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제한 나머지 공간에 적용되는 공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비로 지원(인천대) 공간 부족 단과대학에 인센티브 금액 제공(충북대)

3.5 특수시설공간 정의와 유형

특수시설공간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공간 또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시설공간으로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총장이 지정하는 유형과 사용 주체 요청으로 지정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사용주체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한다.

4. 국립대학교 공간배정기준

4.1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기본 사용면적 기준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같이 면적(㎡)을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군산대학교와 충북대학교는 ‘칸’을, 순천대학교에서는 ‘실’ 단위를 기본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교수연구실은 대체로 25㎡ 내외, 연구용 실험실의 경우 자연공학 계열은 50-90㎡ 범위 내의 면적을 배정하였다. 예체능은 예술계열만 배정(군산대)하거나, 체육계열만 배정(제주대), 체육과 예술 차등 배정(전남대, 창원대)하는 등 다양하게 배정한다. 그러나 인문사회의 경우 연구용 실험실을 배정하지 않는 대학(8개)이 많고, 실습실 경우 배정하는 대학(강원대, 충북대)이 있다.

4.2 학과(전공)당 기본 사용면적 기준

학과(전공)당 기본 사용면적 기준은 주로 학생 수에 단위면적(㎡)을 곱해 기본공간 사용면적을 산출하고 있는 대학이 가장 많은데, 학생 수는 입학정원 수 또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과(전공)당 행정 공간과 강의실, 교육용 실험실습실, 다용도 공간, 세미나실, 학생자치실 등에 대해 배정하며, 학과 행정실을 학과시설(교수 휴게실, 회의실, 창고, 동아리방 등)로 통합하여 학과별 총량을 배정하여 제공하는 대학(안동대, 부경대)이 있다. 이는 전공 특성에 따라 학과가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단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학은 강의실, 행정 공간 등은 대체로 25-50㎡로 배정하였으며, 교육용 실험실습실의 경우 계열에 따라 120-350㎡를 배정받고 있다.

4.3 단과대학별 기본 사용면적 기준

단과대학별 기본 사용면적 기준 또한 학생 수, 면적(㎡), ‘칸’, ‘실’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배정하고 있다. 행정공간과 교원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000명을 기준으로 행정공간은 200-400㎡를 배정하며, 학생활동공간은 75-800㎡로 대학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4 수요자 공간배정기준

학과(전공)당 기본 사용면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공간(학생회실)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는 40명 이상 30㎡, 면적과 칸 기준으로 약 25㎡를 배정하고 있다. 대학원생 연구공간은 평균 25㎡ 배정하고, 경상대학교는 50㎡를 배정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배정기준이 없는 대학이 다수 존재한다.

4.5 시사점

공간 배정기준은 사용주체가 전임교원과 학과(전공), 단과대학으로 구분되어 교육 수요자(학생)를 위한 공간 배정기준이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많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자율학습 공간을 배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생자율학습공간을 배정하여 면학 분위기를 제고하고 대학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수요자이자 대학 연구의 산출인 대학원생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한 실태로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활발한 대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수요자 친화형 공간 배정과 운영

5.1 기본 방향

수요자 친화형 공간 배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간배정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칸’ 또는 ‘실’이라는 공간 단위는 동등한 한 ‘실’이 배정되어도 건물의 형상과 구조에 따라 면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평한 공간배정기준의 의미가 사라진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과 융통성 보안 및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조직이 캠퍼스 공간 및 시설을 선점하여 독점하는 비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공간 유형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배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학과와 교수 단위로 배정된 규정에서 수요자의 공간 요구에 발 맞춰 수요자를 위한 공간배정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구공간 및 학생자율학습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5.2 수요자 친화형 공간 배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간배정기준을 통해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간 공유화를 유도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공간비용채산제를 도입하여 초과면적사용료를 부과한다. 교육 조직 단위별로 배정된 공간은 양적, 질적으로 불균형하게 배정되어 있으므로 공간 공유화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도서관, 체육관 등 비유료화된 공유공간은 대학본부에서 중앙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공간을 공유한 학과 및 대학에게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5.3 수요자 친화형 공간운영규정 제안

5.3.1 용어의 정의

‘기준면적’은 용어가 사용 주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공간으로 정의하여 사용 주체가 공간의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공간배정’으로 개정한다. ‘공간배정’이란 교육연구학생활동행정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공간의 사용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3.2 공간(조정)관리위원회

공간(조정)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직 외에 단과대학별 각 1명의 전임교원을 포함하고, 교수화장이 추천하는 1명, 학생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 책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간(조정)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5.3.3 공간관리규정 시행세칙

(기본사용면적 기준) 공정한 공간배정과 공간비용채산제 운용을 위해서 기본사용면적과 초과공간사용료 부과하는 기준 단위를 면적(m²) 단위로 통일한다.

(공간 보상제 도입) 여러 학과 및 대학이 공간을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 (면적 미달 연구비 지원)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공간을 사용할 경우 기준면적에서 실제 사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공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 (학과 예산 지원) 공간부족 학과에 대해 학과 예산 또는 시설 보원을 지원한다.

(교육 인증제 학과) 학과 특성상 교육학 인증 또는 평가 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는 학과에 한해 인증 또는 평가 기관의 요구 면적이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평가 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5.3.4 특수시설공간 유형

특수시설공간은 예체능 실기 실습을 위한 공간(예체능계열 실습실, 체육관, 설계스튜디오 등), 공유 강의실, 외부에 개방하는 여부 등으로 지정한다.

5.3.5 초과공간사용료

초과공간사용료는 면적(m²)당 초과공간사용료 기준 금액을 제시한다. 기준면적의 10% 또는 20% 초과분부터 초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완충 면적을 설정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초과공간사용료로 징수한 재원을 공간 반납, 면적 미달, 공간 부족 학과 등에 대한 공간 보상으로 지원하여 불균형한 공간 배정을 완화시킨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공간과 관련된 이론, 제도 등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립대학 공간관리규정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요자 친화형 공간운영규정을 제안하였다. 국립대학 공간관리규정은 전임교원, 학과(전공),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대학 수요자(학생)를 위한 공간 배정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캠퍼스 공간은 수요자를 불러들이는 장소 자산이자 대학 홍보 전략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수요자(학생)를 배제한 채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존립 위기에 처한 만큼 한정된 캠퍼스 공간을 수요자(학생)의 요구에 맞춰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관리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규정이 모든 국립대학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유휴공간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공간관리규정의 안정적인 도입은 장기적으로 구성원의 공간 사유화 인식을 없애고 대학 수요자(학생)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간을 공유하여 활용할수록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김치환, 2012). 이에 본 연구는 한정적인 캠퍼스 공간을 대학 수요자(학생)를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간운영규정을 제안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1. 김수영, 김정우, 박다혜, 이상홍(2021) 대학공간 공유를 위한 거점국립대 공간관련 제도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9(2):3-12.

2. 김치환(2012) 대학 캠퍼스 공간비용채산제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14(4):85-96.
3. 옥종호(2008) 대학시설의 효율적 배분과 공간비용 개념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시설학회 15(4):91-95.
4. 정주용, 임동건, 노상태, 박성식, 최정동(2018) 캠퍼스 공간 공개념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5. 대학신문(2012.09.02, <http://www.snunews.com>)
6. 부산대언론사(2014.04.07,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572>)
7. 서울시립대신문(2014.05.12,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9104>)
8. 오마이뉴스(2014.09.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16)
9. 경북대신문(2019.05.13, <https://www.knun.net/news/article.html?no=19798>)